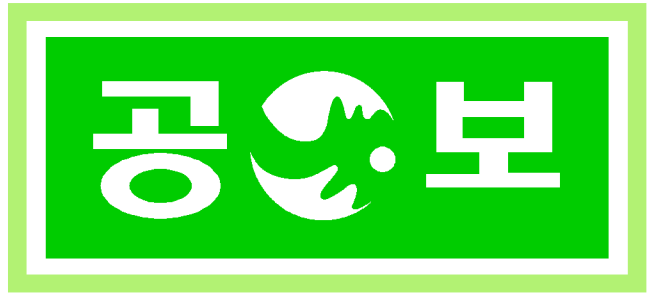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**제 1107 호 2018. 2. 14. (수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5호[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수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8호[하천점용(변경)허가 고시] 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9호[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수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] 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30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33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3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35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] ..... 10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**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##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고시 제2018-25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한국토지주택공사		
	대표자 (성명)	부산울산지역본부장	주소	부산광역시 등구 중앙대로 224, 1층(초량동)
소하천명		화동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37천		
	면적	101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18. 2. 12. ~ 2018. 3. 12.		
	목적 및 사유	우수관로 및 날개벽 설치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- 28호

## 하천점용(변경)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1. 하천의 명칭**

동천, 매곡천, 약수천

**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**
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장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1동)

**3. 점용 목적 및 개요**

산업로 확장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

**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**

가. 위치 : 신천동 368-1번지 외 11필지

나. 면적 : 당초 - 영구 4,138.0㎡, 일시 0.0㎡

          변경 - 영구 4,240.6㎡, 일시 999.9㎡

**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**

일시 : 2018. 2. 14. ~ 2019. 2. 14.

영구 : 2019. 2. 15. ~ 2023. 12. 31.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##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고시 제 2018-29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###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울산광역시		
	대표자 (성 명)	울산광역시장	주소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(신정 1동)
소하천명		이화천, 이원천, 갯안앞천, 수성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북구 중산동 1166-1번지 외 6필지		
	면적	일시 : 183.7㎡ 영구 : 2,773.7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일시 : 2018. 2. 14. ~ 2019. 2. 14. 영구 : 2019. 2. 15. ~ 2023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상수관로 이설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 - 30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,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: 2018. 2. 12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인공구조물 설치(상수로관 이설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신천동 745-1번지 외 9필지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  
가. 면 적 : 일시 - 320.9㎡  
영구 - 18.6㎡  
나. 기 간 : 일시 - 2018. 2. 14. ~ 2019. 2. 14.  
영구 - 2019. 2. 15. ~ 2023. 5. 31.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2018. 2. 14. ~ 2019. 2. 14.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
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장  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1동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33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9(진장동)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2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7B 3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9	2018-02-1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23-1	울산광역시 북구 신암로 31	2018-02-14	기존 지명인 신암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3-11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7-1	울산광역시 북구 안기번들길 133	2018-02-14	이 지역의 옛 지명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-113	울산광역시 북구 괴정1길 116	2018-02-14	기존 지명마을인 괴정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09	
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2B 6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길 32	2018-02-1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2B 6-1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2길 4	2018-02-1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-3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신답로 31(상안동)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.go.kr](http://www.bukg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2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신담로 31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23-1	2018-02-14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-35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##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

#### 1. 공중화장실 연차별 교체·개축 계획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분	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계	18	2	5	6	4	1
교체	15	2	2	6	4	1
개축	3	-	3	-	-	-
소요예산 (백만원)	1,145	215	270	360	240	60

#### 2.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보 계획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분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	
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	개소	예산액
계	45	710.4	46	776.2	47	877	48	767.8	49	598.6
노후화장실 교체	2	215	2	120	6	360	4	240	1	60
노후화장실 개축	-	-	3	150	-	-	-	-	-	-
유지보수	37	109	37	111	37	113	37	115	37	117
위탁관리		380		388		396		404		412
개방화장실	8	6.4	9	7.2	10	8	11	8.8	12	9.6